

농업인의 납세실태와 정책과제

임소영

연구 담당

임소영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기타연구보고 M149

농업인의 남세실태와 정책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0.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삼신인쇄

ISBN | 979-11-6149-108-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 리 말

대다수의 농업인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의 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다. 납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 외에도 납세를 위한 부대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납세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농업인의 납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없어 농업인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는 농업인이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추정하고 납세와 관련하여 농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 연구가 농업인의 납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연구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인의 납세 실태를 파악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추정, 납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① 농업인의 납세 방식 조사, ②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추정, ③ 납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조사, ④ 조세 관련 정부 지원 수요 조사 등임.
- 이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통해 농업인이 납세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측정하고자 하였음.
- 납세협력비용이란 납세자가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정신적·경제적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가 내는 조세와 조세제도로 인한 후생 감소분은 해당되지 않음.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조세제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들인 시간, 매출증빙 또는 매입증빙 자료의 획득과 보관, 자료의 정리, 장부기장, 각종 신고서식 작성 및 제출, 사후 조정, 세무조사 등 납세 준비에서부터 납세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납세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비용을 포함함.

□ 농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

-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였음.
 - 조사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임.

- 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476만 원이며 그 중 67%가 세무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27%가 외부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전체 농업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체당 1,39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와 납세협력비용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데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여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매출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매출액이 커질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업체의 단위 매출액당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해 보면 영세한 업체일수록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음.
 -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 1만 원당 약 368원이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 1만 원당 약 20원에 불과함.
-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과가 영세한 업체 사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함.

□ 세무 관련 농업인의 애로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가 납세 업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신고서식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이 그 다음으로 지목되었음.

-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는 세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신고서류가 그 다음 순으로 지적되었음.
- 농업인들이 세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 대부분은 대리인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이 세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납세 관련 정부 지원 방안

- 농업인들은 정부로부터 납세와 관련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 세금 관련 정보 제공, 세금 관련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따라서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세제 관련 안내문이나 책자를 발행하여 세금 관련 정보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인을 위한 세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가가 세제를 고려하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세무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의 세무 상담, 신고서류 작성,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이를 통해 손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3. 선행연구 3

제2장 농업 관련 세제 현황 및 납세협력비용 발생요인

- 1. 농업 관련 세제 6
- 2. 납세협력비용 18

제3장 농업인의 납세실태

- 1. 납세실태 조사 개요 27
- 2. 납세실태 조사 결과 30

제4장 요약 및 결론 55

부록

- 1. 영농조합법인 대상 설문지 63
- 2. 한돈농가 대상 설문지 71
- 3. 납세 관련 용어 설명 79

참고문헌 81

표 차례

제2장

<표 2-1> 종합소득세 세율	9
<표 2-2> 농산물 매출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10
<표 2-3>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12
<표 2-4> 농산물 매출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15
<표 2-5> 농·임·어업 종사자의 소득세 신고 현황	17
<표 2-6> 농·임·어업 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17
<표 2-7> 농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8
<표 2-8> 납세 관련 업무별 발생 비용 항목	21

제3장

<표 3-1> 농업법인 운영 현황	31
<표 3-2> 응답자 일반 현황	33
<표 3-3> 응답 법인의 농산물 생산 규모	34
<표 3-4> 응답업체의 매출규모	35
<표 3-5> 매출 규모별 근로자 수	36
<표 3-6> 요소별 납세협력비용	37
<표 3-7> 매출규모별 납세협력비용	38
<표 3-8>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	39
<표 3-9>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요소별 납세협력비용	40
<표 3-10>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41
<표 3-11>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	41
<표 3-12> 세금 관련 업무 난이도(영농조합법인)	42
<표 3-13> 영농조합법인의 신고방식	43

<표 3-14> 납세 행정의 문제점	43
<표 3-15> 영농조합법인의 세무 관련 컨설팅 경로	44
<표 3-16> 납세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분야	45
<표 3-17> 한돈농가 응답자 일반현황(1)	46
<표 3-18> 한돈농가 응답자 일반현황(2)	47
<표 3-19> 응답 농가의 신고 세목	48
<표 3-20> 응답 농가의 신고방식	48
<표 3-21> 세무 관련 업무 담당인력	49
<표 3-22> 세금 관련 업무 난이도(한돈농가)	50
<표 3-23> 세금 관련 정보 획득 출처	51
<표 3-24> 납세 관련 문제점	52
<표 3-25> 정부 지원 필요 분야	52
<표 3-26>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이용의사	53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종합소득 소득세 산출 방식	8
<그림 2-2> 법인세 결정체계	1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업인의 상당수는 납세의 의무가 없어 납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의 경우 납세를 하고 있음.
 - 작물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세를 하지 않으나, 축산업 종사자나 작물재배업 이외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납세를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농업사업자는 35,297명, 임업은 5,354명이며 그중 농업사업자 4,285명과 임업사업자 1,926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2015년 기준).

- 납세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적으로 농업인에게 보이지 않는 경비로서 발생되고 있음.
 - 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의 준비, 서식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세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납세 협력비용이라고 부름.

- 납세협력비용은 농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은 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농업인의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과 경로, 납세와 관련된 비용을 높이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도 이루어진 바 없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민간 세무서비스 활용 실태, 세무행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농업인이 보다 원활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전체 농업인 중 납세를 하고 있는 농업인의 비중은 낮지만 이들의 납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향후 농업인의 세무·회계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정책관계자, 농업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낮은 개념으로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와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농업인이 조세제도에 편입된다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의 정의와 개념, 범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추정, 납세와 관련된 문제점 검토, 정부의 지원방안을 다룸.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문헌조사와 농업회계 전문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농업인이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법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3. 선행연구

-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3, 1995), 곽태원(1994), 김형준·박명호(2007), 홍범교 외(2013)가 있음.
- 정수화(1993)는 사례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함.
- 차신준(1993)은 576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차신준(1995)은 대상 법인들의 서류를 바탕으로 전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 곽태원(1994)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 법인세 납세액 대비 납세비용의 비중은 0.76%로 추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비용은 업체당 292만 원으로, 납세액 대비 납세비용의 비중은 0.1%인 것으로 추정됨.

- 김형준·박명호(2007)는 우리나라 사업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납세협력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음.
 -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업체당 4,083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업체당 평균 2,266만 원, 개인사업자는 업체당 평균 597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추정 결과, 매출규모가 클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역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홍범교 외(2013)는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9조 8,877.9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명목 GDP의 0.8%, 2011년 총세수의 5.49%에 해당하는 수준임.
 -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법인 사업자가 5조 416.1억 원(55.1%), 개인사업자가 4조 1,136.5억 원(44.9%), 비사업자가 7,325.3억 원을 부담하였음.
 - 2011년 기준 사업자 전체 신고인원은 503만 업체이며 사업자 1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약 182만 원임.

- 기존 연구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것임(김형준·박명호 2007; 차신준 1993, 1995; 곽태원 1994; 홍범교 외 2013; 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Slemrod and Venkatesh 2002; Sapiei et al. 2014).
 - 20명 미만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법인의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464만 원인 반면 500명 이상 종사하는 법인의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

비용은 9,192만 원으로 조사됨(김형준·박명호 2007).

- 홍범교 외(2013)에 따르면 모든 세목에서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당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여 상시 종업원 수가 0명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 1만 원당 70.7원이지만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자는 1.1원으로 나타남.
- 납세협력비용을 추정된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 부문을 제외한 2·3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홍범교 외(2013)는 농업 사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자 분류 시 농업·임업·광업 사업자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어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계량화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다른 분야와 통합하여 조사됨으로써 농업인이 납세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하였던 농업 분야의 납세협력비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제 2 장

농업 관련 세제 현황 및 납세협력비용 발생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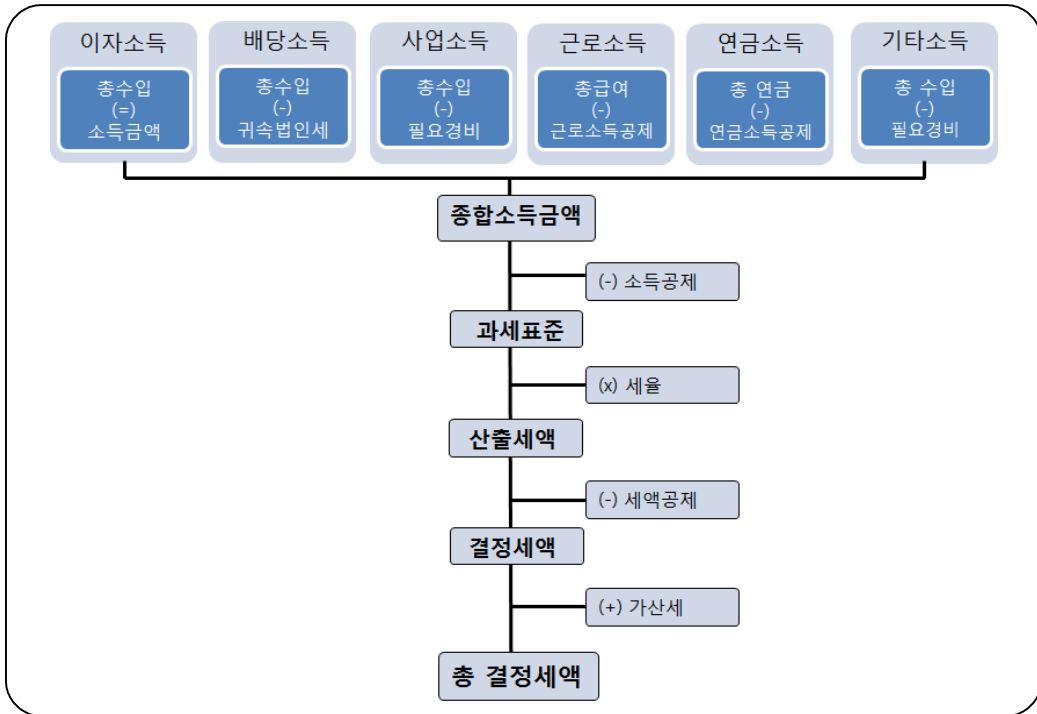
1. 농업 관련 세제

1.1. 소득세

1.1.1. 소득세제 개요

-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덟 가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
- 그중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됨.
 -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됨.

〈그림 2-1〉 종합소득 소득세 산출 방식



자료: 기획재정부(2015); 임소영·김윤진(2016)에서 재인용.

- 사업소득은 총수입(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 등임.
- 종합과세 대상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소득이 비과세로 분류되고 남은 소득은 과세표준으로 확정됨.
 - 소득공제는 인적기본공제, 경로우대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해당됨.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세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며,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제함.

-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해당됨.
- 2017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표 2-1>과 같음.

〈표 2-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0,000
1억 5,000만 원 초과	38	19,400,000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0&menu_b=100&menu_c=400&flag=01: 2017. 10. 14.).

-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는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총 결정세액이 됨.
 - 가산세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포함됨.
-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 과세되지만, 모든 농업소득이 아니라 일부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함.
 -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작물재배업 소득 중 수입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됨.
 -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또는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함.

- 농산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 외에도 기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 즉 농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 또한 농가 민박, 음식품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한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일 때에도 소득세 비과세 됨.

〈표 2-2〉 농산물 매출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농업인 유형	과세 여부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작물재배업	수입액 10억 원 이상은 과세, 10억 원 미만은 비과세
축산업 임업	과세 (단, 축산업의 농가부업규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하며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주: 축산업의 농가부업규모는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1.1.2. 소득세의 신고

- 소득세의 신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짐.
- 소득세 신고방식은 장부방식과 추계방식으로 나뉨.
 - 장부방식은 장부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추계방식은 장부가 없는 대신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장부방식은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는 신고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3억 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람은 장부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3억 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람은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함.
 -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수입금액 6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음.
 - 농업분야의 단순경비율은 80~97.2%이며 기준경비율은 7.4~15.5%임.

- 납세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류는 신고방식에 따라 달라짐.
 - 복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비롯하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손익을 나타내는 서류, 영수증 수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간편장부 신고자는 복식부기 신고자에 비해 제출서류가 적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만 제출함.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없음.

〈표 2-3〉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신고유형	제출서류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조정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료: 임소영·김윤진(2016).

-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 장부기장 및 비치의무
 -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및 영수증 발급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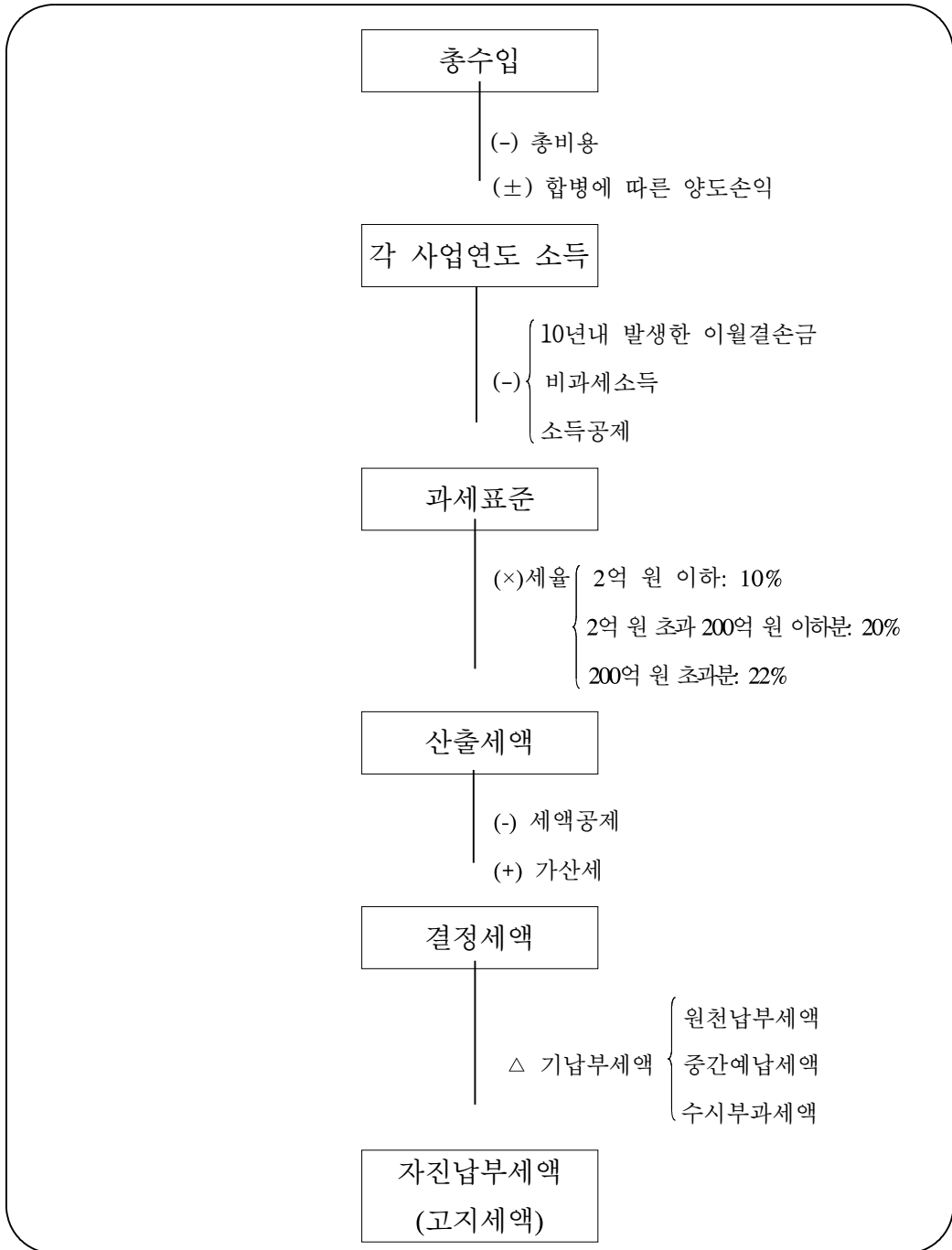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표준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임.

1.2. 법인세

1.2.1. 법인세 개요

-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에 적용되는 세목임.
- 법인세의 계산절차는 <그림 2-2>에 간략하게 제시되었음(기획재정부 2016: 82-84).
 - 법인의 총수입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예를 들면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임대수입,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이 있음.
 - 법인의 총비용은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상품의 보관·포장·운반 등 판매부대비용,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 수선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이 포함됨.
- 법인세 세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10%, 20%, 22%가 적용되지만 농협 등의 조합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9%,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함(농림축산식품부 2016).

〈그림 2-2〉 법인세 결정체계



자료: 기획재정부(2016). 『조세개요 2016』.

-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가 달라짐.
 - 식량작물재배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됨.
 - 작물재배나 그 외의 농업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까지만 면제됨.

〈표 2-4〉 농산물 매출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농업인 유형		과세 여부
식량작물재배업		면제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연간 6억 원/수입금액)×소득금액까지 면제
	농업회사법인	(연간 50억 원/수입금액)×소득금액까지 면제
축산업·임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까지 면제
	농업회사법인	법인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자료: 농식품부(201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1.2.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포함됨.
-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임.
- 법인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하여야 함.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 및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수취 시 손비는 인정하되,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
 - 다만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금융·보험업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 또한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포괄적사업양도,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등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수취의 의무가 없음.

1.3. 농업인의 납세 현황

- 상당수의 농업인은 납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의 개인농가와 농업법인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미가공 농산물과 미가공 농산물의 1차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농업인이 비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농·임·어업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2015년에 소득신고를 한 건수는 25,315건이며 신고한 자의 총 수입은 7조 4,338억 원, 소득은 5,221억 원이었음.
- 2015년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농·임·어업에 종사자는 66,483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총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1조 5,309억 원, 과세표준은 7,456억 원이었음.

〈표 2-5〉 농·임·어업 종사자의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 원

소득원	건수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소득 신고	25,315	7,433,783	522,105
과세소득	19,742	6,846,750	569,557
결손소득	5,573	587,033	-47,452
	인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 신고	66,483	1,530,892	745,640

자료: 국세청(2016). 『국세통계연보 2016』.

- 2015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농·임·어업 법인은 총 10,495개이며 그중 결산 서상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법인은 4,623개,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법인은 5,872개임.
- 2015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농업법인은 3,635개이며 이들의 납부세액은 142억 5,000만 원이며, 환급세액은 199억 7,900만 원으로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컸음.
- 2015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 농업사업자는 493명이며, 이들의 납부세액은 21억 6,700만 원, 환급세액은 9억 8,000만 원임.

〈표 2-6〉 농·임·어업 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 원

	법인 수	수입금액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4,623	2,127,712	-436,117
당기순이익	5,872	10,459,633	729,426

자료: 국세청(2016). 『국세통계연보 2016』.

〈표 2-7〉 농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사업자 유형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
법인사업자	3,635	591,703	14,250	19,979
일반사업자	493	44,040	2,167	980

자료: 국세청(2016). 『국세통계연보 2016』.

2. 납세협력비용

2.1. 납세협력비용의 개념과 범위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통칭함.¹

-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납세협력비용이 순수하게 납세를 위한 지출만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납세를 위해서가 아닌 경영상의 목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위한 지출이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신고서의 작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등 조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내는 세금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은 포함되지 않음.²

1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징수자도 마찬가지임. 징수자, 즉 징수를 담당한 행정기관이 지출하는 행정비용은 납세징수비용이라고 함. 납세징수비용은 조세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조세 법령의 집행, 조세 법령의 해석과 쟁의 등과 관련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함.

- 납세협력비용은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됨.
 - 납세자가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납세자가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비용
 - 납세자가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

- 이론적으로는 납세자가 납세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 시간, 정신적 비용까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시간과 정신적 비용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 추정에는 주로 금전적 비용만 고려함.

- 납세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크게 기장과 결산 등 납세를 준비하는 과정과 신고 및 납부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나 과세불복에 따르는 활동까지 포함함.
 - 납세를 준비하는 과정은 장부기장 및 보관,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계산서 발행 및 교부, 결산이 해당됨.
 - 신고 및 납부 과정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추가자료 제출, 과세자료 소명이 해당됨.

- 각 활동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납세자가 내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납세자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출하는 외부 비용으로 구분됨(이전오 외 2008).

2 조세제도는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효율성이 떨어지게 만들. 효율성의 상실은 납세자에게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추가적 부담을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고 일컬음. 즉 초과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의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부담을 조세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혹은 후생비용(welfare cost)이라고 부르기도 함(이준구·조명환 2016: 456).

- 내부비용에는 인건비, 비품·소모품비, 인쇄비, 보관·유지비, (세금)계산서 구입비, 우편·통신비, 여비·교통비,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됨.
 - 인건비는 세금 관련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연봉과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직접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함.
 - 비품·소모품비는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화, 팩스, 책상 등의 비품과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임.
 - 인쇄비는 세무 관련 각종 서식, 전표 등을 인쇄하는 비용임.
 - 보관·유지비는 작성한 종이장부나 기록된 전산시스템을 일정 기간 동안 비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 유지
 - (세금)계산서 구입비는 (세금)계산서 서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임.
 - 우편·통신비는 세무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우편·전화 요금을 의미하며, 세금 관련 정보 검색을 위하여 지불하는 인터넷 통신비도 포함됨.
 - 여비·교통비는 납세 및 사후업무를 위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임.
 - 전산장비 구입비는 장부의 기장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프로그램 또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함.

- 외부비용에는 납세자가 납세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상담·용역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민원서류 발급비 등이 포함됨.
 - 상담·용역비는 상담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수시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함.
 - 고문료는 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자문료를 말함.
 - 대리기장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대리할 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
 - 세무조정비는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
 - 세무조사 용역비는 사업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대리인에게 상담료,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 민원서류 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

- 민원서류 발급비는 행정자료 등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발급비용을 말함.
- 불복청구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및 고충처리 등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함.

〈표 2-8〉 납세 관련 업무별 발생 비용 항목

납세 관련 업무		내부비용	외부비용
장부기장 및 보관	기장	인건비, 비품소모품비	상담용역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민원서류 발급비
	장부보관	임차료, 전산장비 구입비, 보관유지비	대리기장비
비용 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		보관유지비	대리기장비
매출증빙자료 발행 및 교부		인건비, (세금)계산서 구입비	대리기장비
결산	장부마감	인건비, 비품소모품비	상담비,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세무조정 및 감사	인건비	세무조정비, 고문료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대리기장비
	세금납부	인건비, 전기료, 통신비	
사후검증	추가자료 제출	인건비, 인쇄비, 전기료	대리기장비
	과세자료 소명	인건비, 통신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세무조사	조사준비	인건비, 소모품비, 인쇄비	대리기장비
	조사 진행	인건비, 교통비, 우편통신비	상담용역비, 세무조사 용역비, 민원서류 발급비
과세불복	과세전적부심, 사후불복, 고충처리	인건비, 교통비, 우편통신비	불복청구비

자료: 이전오 외(2008: 12)를 저자가 재구성.

2.2.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방법

-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쓰이는 방법은 설문조사, 심층 사례조사, 세금 전문가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치를 이용한 국제비교, 설문조사와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표준비용모형 등이 있음 (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4-8).
-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곽태원(1994), 차신준(1993, 1995), 김형준·박명호(2007)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음.
 - 설문조사는 전문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지만, 설문조사지의 구성이나 응답자의 미응답으로 인한 정보 누락, 납세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응답자의 자의적 평가, 납세 관련 활동과 기타 경영 관련 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어려움(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8-10).
- 일부 연구자들은 몇몇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수화(1993)가 대표적임.
- 세금 전문가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치를 활용하는 경우는 PwC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Paying Taxes’가 사례임. 각 국가의 세금 전문가가 표준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비교에 이용하는 방식임(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6).
- 미국의 Internal Revenue Service(IRS)는 설문조사와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다수의 모형을 개발하였음 (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6).

- Arthur D. Little(ADL) 모형, Individual Taxpayer Burden Model(ITBM), Small Business Burden Model(SBBM), Business Taxpayer Burden Model(BTBM) 등이 있음.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SCM)은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모형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정부 규제로 인하여 민간이 지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임(박명호 2008: 8).
- 납세자는 납세를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데 드는 표준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수량에 곱하여 총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임.
 - 표준원가의 계산은 “표준적으로 효율적인(normally efficient)”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사례는 박명호·김형준·조진권(2008)과 홍범교 외(2013)가 있음.
- Paying Taxes와 표준비용모형은 납세 전문가가 ‘표준기업’을 선정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납세협력비용 추정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납세협력비용 추정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Eichfelder and Vaillancourt 2014: 6).

2.3.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소

- 농업인에게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세제 자체가 유발하는 것과 농업인의 특수성에서 오는 환경적 제약으로 구분됨.
-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데에는 세제의 복잡성이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음(김형준·박명호 2007).
 - 서식 작성 시 첨부서류를 납세자가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세제가 과도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고서식 건수가 많음.
 - 각 서식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식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산 내역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
- 그러나 세제의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도 농업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이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사무용품이나 농자재 등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농업인이 영농기자재를 구입한 데 대해서 비용 증빙 서류의 수취가 어려움.
 - 농협이나 대형 농기자재 상인으로부터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취급하지는 않음.
 - 농작업의 계절요인으로 인해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보다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노동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 없이 고용하는 것이 관행임.

- 농촌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인이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고 납세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감이 타 집단에 비해 클 수 있음.
- 세무 대행 서비스와 관련 정보는 중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가는 지역의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
- 세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가 낮고 이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우협회 방문조사 결과 축산농가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축산물 판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지만 축산소득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단,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부업규모의 기준은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0,000마리임.
 - 우리나라 농가 평균 사육두수는 약 32마리이며 부업규모를 초과한 5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한육우 가구는 15,129가구임(2017년 2/4분 기준).
 - 따라서 상당수의 한육우 농가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소득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를 실제로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판단됨.

제 3 장

농업인의 납세실태

1. 납세실태 조사 개요

-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인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농업인이 납세에 대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납세 신고를 한 농업 사업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함.
-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은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납세를 하고 있어야 함.
- 조사대상의 조건을 부합하는 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축산농가로 좁혀짐.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집단은 설립주체, 사업범위에 차이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임. 또한 영농조합법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가 더 넓음.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농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근배양 산업, 농산물 구매·비축 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이 추가됨.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가 농업생산에 보다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또한 축산소득은 작물재배소득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축산 농가는 납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됨.
-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6년 귀속분 기준 세금을 신고한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이며 영농조합법인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내용 확인 후 전화조사 실시하였고, 한돈농가는 협회 지부를 통하여 대면조사를 하였음.
- 조사내용
- (일반사항) 사업 유형 및 취급 농축수산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작면적 및 출하 가축 수, 종사자 수, 총 매출액 및 사업 유형별 매출액 비중
 - (납세 현황) 세무 업무 담당자 수 및 업무 비중, 세무 업무 관련 지출 인건비 및 비용, 대리인 이용 여부 및 비용, 납세 준비 작업 중 어려운 항목, 신고 방법
 - (세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여부 및 세무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납세 및 세무행정의 어려움, 지원 필요 분야

○ 이 연구에서 정의한 납세협력비용의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음.

납세협력비용=내부비용+외부비용

=내부 인건비+인건비 외 비용+외부 대리인 관련 비용

내부인건비=세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전체 업무 중 세무 업무 비중

○ 인건비 외 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짐.

- 기록 보관·유지비
- 인쇄비
- 여비·교통비
-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 비품·소모품비-전기료 등 공과금
- 그 외 기타

○ 납세협력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부 인건비인데 한돈농가의 경우 인건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농업인 자신이거나 가족으로서, 명시적인 급여가 없으므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따라서 한돈농가의 납세협력비용은 추정하지 않고 납세 관련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의견만 조사함.

2. 납세실태 조사 결과

2.1. 영농조합법인

-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수는 2015년 현재 총 12,979개이며 전체 농업법인수는 17,484개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7).
- 작물재배현황과 가축사육현황을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보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4,230개로 영농조합법인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1,787개로 전체 농업회사법인의 31.4%를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 수나 매출규모 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보다 작음.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근로자 수는 5.9명이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당 근로자 수는 8.0명임.
 - 영농조합법인의 절반가량이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가진 소규모 업체인 반면 농업회사법인 중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가진 소규모 업체는 35.6%가량임.
-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농업생산 비중이 높고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어 일반적인 ‘농업인’의 특성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됨.

〈표 3-1〉 농업법인 운영 현황

특성		농업법인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법인수	17,484	11,792	5,692	
	법인당 종사자 합계(명)	6.6	5.9	8.0	
	상시종사자	5.3	4.6	6.8	
	임시·일용 근로자	1.3	1.3	1.3	
	외국인 근로자	0.3	0.2	0.5	
경지면적	작물재배 법인수	6,486	4,559	1,927	
	법인당 재배면적(ha)	10.4	12.2	6.2	
	노지	12.0	13.8	7.2	
	시설	2.3	2.6	1.9	
사업유형	총 법인수	17,484	11,792	5,692	
	농업생산	6,017	4,230	1,787	
	가공업	3,256	1,916	1,340	
	유통업	4,512	2,885	1,627	
	농업서비스업	931	809	122	
	기타	2,768	1,952	816	
가축사육	가축사육 법인수	1,326	850	476	
	사육두수	한육우(마리)	133,860	102,341	31,519
		젖소(마리)	6,933	5,508	1,425
		돼지(마리)	2,855,246	1,383,774	1,471,472
		닭(백 마리)	418,219	166,599	251,619
		꿀벌(마리)	27,928	18,433	9,495
		사슴(마리)	346	208	138
		오리(마리)	28,333	8,832	19,501
		기타(마리)	4,575,160	1,028,914	3,546,246
매출액	결산 법인수	13,858	8,700	5,158	
	규모별 법인수	1억 원 미만	6,117	4,279	1,838
		1억~5억 원	2,827	1,823	1,004
		5억~10억 원	1,267	810	457
		10억~20억 원	1,148	644	504
		20억~50억 원	1,357	680	677
		50억~100억 원	640	278	362
		100억 원 이상	502	186	316

주: 종사자 법인수는 전체 법인 중 종사자에 대한 응답을 한 법인만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2.). 『2015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2.1.1. 응답자 일반현황

- 이 연구에서는 총 802개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그중에서 155개 업체가 조사에 응함(응답률 19.3%).
 - 접촉실패 506개, 조사거절 125개, 조사대상 조건 미부합 16개
- 응답업체의 설립 연도는 1998년 이전부터 2010년 이후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기타 세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 응답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이며 경북과 경남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전남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은 전체 응답업체의 21.9%이며, 경북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은 18.9%, 경남 지역은 12.9%임.
- 응답 업체들은 농축산물 생산 외에도 농축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농작업 대행 등 농업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및 외식업 등에도 종사하고 있음.
 - 응답업체는 평균적으로 1.75개의 사업유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유형을 운영하는 법인은 전체 응답자의 55.5%에 이룸.
- 응답 업체 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86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9개 업체는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산물 가공, 유통, 관광 및 외식업을 병행하고 있음.

〈표 3-2〉 응답자 일반 현황

응답자 특성		빈도	비중(%)	
전체		155	100.0	
법인 설립 연도	1998년 이전	36	23.2	
	1999~2004년	34	21.9	
	2005~2009년	52	33.5	
	2010년 이후	33	21.3	
신고 세목	법인세	153	98.7	
	부가가치세	135	87.1	
	기타 세금	10	6.5	
법인 소재지	부산광역시	2	1.3	
	대구광역시	1	0.6	
	인천광역시	2	1.3	
	광주광역시	1	0.6	
	대전광역시	1	0.6	
	경기도	11	7.1	
	강원도	8	5.2	
	충청북도	11	7.1	
	충청남도	12	7.7	
	전라북도	19	12.3	
	전라남도	34	21.9	
	경상북도	28	18.1	
	경상남도	20	12.9	
	제주특별자치도	5	3.2	
	사업 유형	농축산물 생산	69	44.5
		농축산물 가공업	84	54.2
농축산물 유통업		105	67.7	
농작업 대행		2	1.3	
관광 및 외식업		8	5.2	
기타 사업유형		4	2.6	
취급 농산물	식량작물	33	21.3	
	과수	36	23.2	
	채소	44	28.4	
	화훼	3	1.9	
	축산	19	12.3	
	특용작물	21	13.6	
	임산물	13	8.4	
	기타	7	4.5	
없음	4	2.6		

- <표 3-3>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의 연간 영농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 노지를 가진 업체의 평균 노지면적은 36,550평이며 최대 60만 평까지 경작하고 있음.
 - 평균 시설면적은 4,290평이며 최대 5만 평까지 경작하고 있음.
 - 소의 평균 출하두수는 799마리이며 최대 1,000마리까지 출하한 것으로 나타남.
 - 돼지의 경우 평균 출하두수는 4,714마리임.

〈표 3-3〉 응답 법인의 농산물 생산 규모

경지면적/출하두수	법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노지면적(평)	45	36,550	94,124	1,000	600,000
시설면적(평)	32	4,290	9,425	60	50,000
소 출하두수(마리)	7	799	301	200	1,000
돼지 출하두수(마리)	7	4,714	4,192	1,000	10,000
기금류 출하두수(마리)	4	1,484,000	2,664,970	1,000	5,475,000

-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응답한 영농조합법인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영농조합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함.
- 2015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9억 4,221만원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영농조합법인 8,700개 중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업체는 70.1%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약 25.8%이며,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21.9%에 이르고 있음.

〈표 3-4〉 응답업체의 매출규모

매출액	빈도수	비중(%)
5억 원 미만	40	25.8
5억~10억 원 미만	26	16.8
10억~15억 원 미만	15	9.7
15억~30억 원 미만	18	11.6
30억~50억 원 미만	11	7.1
50억~70억 원 미만	8	5.2
70억~100억 원 미만	3	1.9
100억 원 이상	34	21.9
전체	155	100.0

- 종사자 수로 볼 때에도 응답업체가 평균적인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5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업체당 평균 근로자 수는 5.9명이며, 그중 상시종사자는 4.6명, 임시근로자는 1.3명임.
 - 한편 응답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16.1명이며, 이 중 상시근로자는 11.8명, 임시근로자는 4.3명으로 영농조합법인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근로자 수는 대체적으로 매출액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억 원 미만 법인의 평균 근로자수는 9.9명이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평균 25.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응답업체의 납세 업무 담당자는 평균 약 1.1명이며, 매출규모와 납세 업무 담당자의 수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매출 규모별 근로자 수

단위: 명

매출액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전체 근로자	납세 담당자
5억 원 미만	5.6	4.3	9.9	1.0
5억~10억 원 미만	5.7	3.5	9.2	1.1
10억~15억 원 미만	12.9	9.8	22.7	1.1
15억~30억 원 미만	8.7	3.4	12.1	1.2
30억~50억 원 미만	12.2	2.0	14.2	1.0
50억~70억 원 미만	22.9	3.5	26.4	1.3
70억~100억 원 미만	25.0	0.3	25.3	1.0
100억 원 이상	21.1	4.0	25.2	1.2
전체	11.8	4.3	16.1	1.1

2.1.2. 영농조합법인의 납세협력비용

- 응답 법인의 평균 연간 납세협력비용은 1,476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적게 지출하는 법인은 189만 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법인은 5,13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납세협력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서 설문에 응답한 영농조합법인이 평균적으로 세무 업무 담당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연간 1,109만 원이며, 각 법인이 인건비로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총 납세협력비용의 66.9%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리인 비용이 총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2%임.
 - 조사 결과 155개 업체 중 151개 업체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약 298만 원이었음.

- 납세 업무를 위해 비품을 구입하거나 장부를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에 들어간 비용은 총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으며, 업체당 평균 69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 요소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 원

납세협력비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건비	1,109	885	8	4,680
인건비 외 비용	69	78	0	427
기록보관비	3	9	0	50
인쇄비	8	19	0	132
여비교통비	11	18	0	100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	11	28	0	150
소모품비	18	30	0	140
전기료 등 공과금	18	32	0	140
대리인 비용	298	176	0	800
합계	1,476	948	189	5,130

- 납세협력비용을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은 납세협력비용으로 919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은 납세협력비용으로 2,0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협력비용을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 대리인 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대리인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외 비용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함.
- 이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지출 증빙자료의 수취나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 발생 빈도가 잦아져 관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7〉 매출규모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 원

매출액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	대리인 비용	합계
5억 원 미만	663	71	185	919
5억~10억 원 미만	1,100	93	246	1,440
10억~15억 원 미만	1,076	33	311	1,421
15억~30억 원 미만	1,174	70	291	1,535
30억~50억 원 미만	1,374	35	303	1,711
50억~70억 원 미만	1,196	59	394	1,649
70억~100억 원 미만	1,073	38	421	1,533
100억 원 이상	1,516	80	434	2,030

주: 인건비 외 비용은 기록보관 유지비, 인쇄비, 여비,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소모품비, 전기료 등 공과금 등임.

○ 총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이 정비례하는 것과는 달리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과 매출규모는 반비례하고 있음.

- 각 구간별 중간값을 이용하여 평균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결과,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은 매출액 1만 원당 약 367.7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은 매출액 1만 원당 약 20.3원을 지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는 납세협력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전산장비, 장부, 세무 업무 담당 인력 등은 납세활동의 빈도나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표 3-8〉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

단위: 원

매출액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	대리인 비용	합계
5억 원 미만	265.3	28.5	73.9	367.7
5억~10억 원 미만	146.7	12.5	32.8	192.0
10억~15억 원 미만	86.1	2.7	24.9	113.7
15억~30억 원 미만	52.2	3.1	12.9	68.2
30억~50억 원 미만	34.3	0.9	7.6	42.8
50억~70억 원 미만	19.9	1.0	6.6	27.5
70억~100억 원 미만	12.6	0.4	5.0	18.0
100억 원 이상	15.2	0.8	4.3	20.3

- 단위 매출액당 납세협력비용과 매출규모와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이 연구의 목적인 농업인의 납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에 보다 가깝다고 보이므로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함.
- 농산물 생산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여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더 영세함.
 -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30.4%가 매출액 5억 원 미만이며, 47.8%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임.
 - 그러나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비중이 38.4%로 나타나 농산물 생산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더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는 납세협력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여타 영농조합법인보다 적은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이 납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391.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전체 업체 평균 납세협력비용인 1,476만 원보다 낮은 수준임.

〈표 3-9〉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요소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 원

납세협력비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건비	1,026.4	863.3	8.4	3,660.0
인건비 외 비용	68.7	87.4	0.0	427.0
기록보관비	5.2	11.6	0.0	50.0
인쇄비	9.6	17.1	0.0	100.0
여바교통비	12.6	19.2	0.0	100.0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	12.3	29.5	0.0	150.0
소모품비	14.1	25.7	0.0	100.0
전기료 등 공과금	14.9	28.2	0.0	120.0
대리인 비용	296.6	164.1	0.0	720.0
합계	1,391.7	942.3	188.5	4,259.0

-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업체와 마찬가지로 매출규모와 납세협력비용은 대체적으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5억 원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은 평균 894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100억 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은 평균 1,911만 원을 지출하고 있음.

〈표 3-10〉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 원

매출액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	대리인 비용	합계
5억 원 미만	621.0	59.6	213.8	894.4
5억~10억 원 미만	984.0	103.8	262.3	1,350.1
10억~15억 원 미만	1,048.1	36.8	317.0	1,401.9
15억~30억 원 미만	1,459.1	64.3	300.0	1,823.4
30억~50억 원 미만	909.3	16.0	392.5	1,317.8
50억~70억 원 미만	1,564.0	80.0	400.0	2,044.0
70억~100억 원 미만	-	-	-	-
100억 원 이상	1,408.0	95.7	407.6	1,911.3

주: 70억~100억 원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은 없음.

-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업체 평균보다 낮지만 매출규모와 단위 매출당 납세협력비용이 반비례 관계인 것은 동일함.

〈표 3-11〉 농산물 생산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

단위: 원

매출액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	대리인 비용	합계
5억 원 미만	248.4	23.8	85.5	357.7
5억~10억 원 미만	131.2	13.8	35.0	180.0
10억~15억 원 미만	83.8	2.9	25.4	112.1
15억~30억 원 미만	64.9	2.9	13.3	81.1
30억~50억 원 미만	22.7	0.4	9.8	32.9
50억~70억 원 미만	26.1	1.3	6.7	34.1
70억~100억 원 미만	-	-	-	-
100억 원 이상	14.1	1.0	4.1	19.2

2.1.3. 납세 관련 영농조합법인의 인식

- 영농조합법인의 납세활동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신고서식 작성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업체가 난이도 1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한 분야는 신고서식 작성이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3-12〉 세금 관련 업무 난이도(영농조합법인)

세금 관련 업무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신고서식 작성	64	1	10	13	67	155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39	51	10	18	37	155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22	54	31	36	12	155
기타 비용(사무용품, 운반비 등)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9	29	64	30	13	155
장부기장 및 비치	11	20	40	58	26	155

- 다만 신고서식 작성은 1순위로 지목한 64개 업체와 비슷한 수의 업체가 5순위로 지목하였음.
- 신고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전자신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약 75%는 전자신고만 하고 있으며, 약 23.2%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병행하고 있음.

〈표 3-13〉 영농조합법인의 신고방식

신고방식	빈도	비중(%)
서면신고	3	1.94
전자신고	116	74.84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36	23.23
합계	155	100

- 영농조합법인이 납세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세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임.
- 이는 복잡한 조세제도에 대해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 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영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등 세제와 관련된 정보가 농협 사무소에 비치되는 등 최소한의 안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농업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3-14〉 납세 행정의 문제점

납세 행정 문제점	빈도	비중(%)
신고 및 납부 횟수의 과다	12	7.74
복잡한 신고절차	27	17.42
과다한 서류제출	41	26.46
세금 관련 정보 부족	59	38.06
기타	2	1.30
없음	14	9.03
합계	155	100

- 실제로 세제에 대한 정보 획득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을 이용하는 경우는 단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정부 주도로 세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세금 관련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음.
- 납세를 해야 하는 개인농가는 생산자 협회를 통해 세제 관련 문의를 하고 생산자 단체는 관련 문의사항을 세무회계법인에 전달하여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정부에서 시행 중인 교육·훈련 사업들은 농업기술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으며, 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농가 경영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세금 관련 정보 부족 외에 과도한 서류제출과 복잡한 신고절차가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음.

〈표 3-15〉 영농조합법인의 세무 관련 컨설팅 경로

세무 관련 컨설팅	빈도	비중
세무회계법인	149	96.1
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	1	0.6
정부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1	0.6
인터넷 포털 사이트	2	1.3
가족, 지인,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인적 네트워크	2	1.3
전체	155	100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 정부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바라는 분야는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6〉 납세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분야

지원 필요 분야	빈도	비중(%)
정부 지원 필요 없음	12	7.74
세금 관련 정보 제공	42	27.1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33	21.29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	59	38.06
기타	9	5.81
합계	155	100

2.2. 한돈농가

2.2.1. 응답자 일반현황

-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할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27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2세임.
- 응답자의 평균 출하두수는 4,041마리이며, 평균 사육두수는 3,428마리임.
 - 돼지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2015년 기준 1,679마리였으며, 전체 평균 사육두수와 비교할 때 응답자의 사육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 농가에서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합하여 평균 4.1명임.

〈표 3-17〉 한돈농가 응답자 일반현황(1)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연령(세)	127	54.2	10.4	25	76
출하두수(마리)	123	4,041.2	4,118.4	400	28,000
사육두수(마리)	117	3,427.6	3,781.9	0	24,000
노지면적(평)	60	2,900.8	2,257.9	100	9,000
시설면적(평)	18	676.1	1,379.8	0	6,000
근로자수(명)	127	4.1	4.6	0	36

- 응답자의 과반수는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농업인이며,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
- 응답자의 지역분포는 돼지 농가의 지역분포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북지역의 응답자 비중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와 전남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응답 농가의 절반 이상이 타 작목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타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은 식량작물임.
- 응답 농가의 대부분은 타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가만 농·축산물 가공이나 유통, 농작업대행에 종사하고 있음.

〈표 3-18〉 한돈농가 응답자 일반현황(2)

	변수	빈도수	비중
영농경력	5년 미만	4	3.2
	5~9년 미만	9	7.2
	10~14년 미만	19	15.2
	15~19년 미만	15	12.0
	20년 이상	78	62.4
학력	중졸 이하	16	12.8
	고졸 이하	51	40.8
	대졸 이하	45	36.0
	대학원졸 이상	13	10.4
지역	강원도	9	7.1
	경기도	26	20.5
	충청남도	14	11.0
	충청북도	8	6.3
	경상남도	15	11.8
	경상북도	27	21.3
	전라남도	20	15.8
	전라북도	5	3.9
	제주도	3	2.4
돼지 외 생산 농산물	식량작물	22	19.1
	과수	6	5.2
	채소	14	12.2
	화훼	0	0.0
	축산	17	13.7
	특용작물	2	1.7
	임산물	0	0.0
	기타	2	1.7
	없음	73	63.5
농업 외 종사 업종	농축산물 가공업	1	1.0
	농축산물 유통업	2	1.9
	농작업대행	1	1.0
	관광 및 외식업	0	0.0
	기타	3	2.9
	없음	96	93.2

2.2.2. 응답자의 납세현황

- 응답자 중 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한 농업인은 100명으로 전체 응답 농가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3-19〉 응답 농가의 신고 세목

세목	빈도수	비중
소득세	100	88.5
법인세	10	8.9
부가가치세	3	2.7
합계	113	100.0

- 세금을 신고한 농가들이 사용하는 신고방식은 장부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부를 이용하는 방식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활용으로 나뉘어지는데, 복식부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농가도 응답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0〉 응답 농가의 신고방식

신고방식	빈도수	비중
복식부기	37	35.6
간편장부	27	26.0
추계방식	6	5.8
모름	34	32.7
합계	104	100.0

- 세금 신고방식을 모른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대부분 외부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신고방식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3-21>은 응답 농가의 세무 업무 담당인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와 두 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를 표시한 것임.
 - 대각선에 표시된 숫자는 해당 인력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셀에 표시된 숫자는 공동 담당임.
- 응답 농가에서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세무 대리인인 것으로 나타남.
 - 세무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농가 내 인력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은 응답자의 86.3%에 이룸.

〈표 3-21〉 세무 관련 업무 담당인력

	본인	배우자	자녀	종업원	세무대리인
본인	9	0	0	0	6
배우자	0	3	0	0	3
자녀	0	0	1	0	1
종업원	0	0	0	2	0
세무대리인	0	0	0	0	91
합계	9 (7.7)	3 (2.6)	1 (0.9)	2 (1.7)	101 (86.3)

주 1)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1건 있었음.
 2) 괄호 안은 응답자 대비 비중임.

- 한돈농가에서 납세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는 신고서식 작성인 것으로 나타남.
- 신고서식 작성을 난이도 1순위로 지목한 농가는 25개이며, 이들 농가는 경영주의 연령과 학력이 낮고,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리인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을 1순위로 지목한 농가는 경영주의 연령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리인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대리인을 많이 이용하는 그룹이 해당 업무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반면, 신고서식 작성은 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이용하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지 않음.

〈표 3-22〉 세금 관련 업무 난이도(한돈농가)

세금 관련 업무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계
신고서식 작성	25	14	6	7	26	3	81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22	16	13	11	6	17	85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5	24	9	14	20	3	85
장부기장 및 비치	13	10	19	23	10	5	80
인건비 외 비용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0	12	22	17	8	14	83
신고서류 제출	2	11	15	10	8	36	82

2.2.3. 세무행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응답 농가가 세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세무·회계 대리인이거나 생산자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서 발행하는 안내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 세금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3〉 세금 관련 정보 획득 출처

정보 출처	빈도수	비중
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42	36.8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6	5.3
인터넷 포털 사이트	6	5.3
가족, 지인,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인적 네트워크	8	7.0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64	56.1
기타	0	0.0
합계	114	100.0

주: 중복응답.

- 응답 농가가 세무 관련 업무 중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복잡한 신고절차이며, 세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익숙지 않은 전자신고도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상당수임.

〈표 3-24〉 납세 관련 문제점

문제점	빈도수	비중
신고 및 납부 횟수의 과다	9	7.9
복잡한 신고절차	38	33.3
과다한 신고서류	26	22.8
세금 관련 정보 부족	34	29.8
익숙지 않은 신고방법(전자신고의 경우)	31	27.2
세무서의 지리적 접근성 떨어짐	3	2.6
기타	1	0.9
합계	114	100.0

주: 중복응답.

- 농업인의 납세를 돕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았음.

〈표 3-25〉 정부 지원 필요 분야

지원 분야	빈도수	비중
정부 지원 필요없음	8	6.7
세금 관련 정보제공	28	23.5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49	41.2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	43	36.1
전체	119	100.0

주: 중복응답.

- 향후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가 세무 관련 컨설팅, 세무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 3-26〉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이용의사

응답	빈도수	비중
활용의사 있음	72	62.1
활용의사 없음	25	21.6
모르겠음	19	16.4
합계	116	100.0

제 4 장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필요성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함.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부가적으로 지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납세자가 느끼는 실질적 세부담은 납세자가 내는 세금과 납세협력비용을 합한 금액이 됨.
- 납세협력비용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특히 농업인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체감하는 납세협력비용은 타 산업에 비해 큼.

- 따라서 농업인이 납세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납세 현황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함.

□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 납세 실태를 파악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농업인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어려워하는 분야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였음.
- 농업인의 납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두 그룹은 농업인 중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어 설문대상으로 적절함.
- 설문조사의 목적은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납세 관련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임.
- 납세협력비용 추정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한돈농가는 내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어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할 수 없었음.
- 영농조합법인의 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476만 원이며, 그중 67%가 세무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고 27%가 외부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392만 원으로 전체 영농조합법인보다 낮은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납세협력비용도 커지고 있으나 납세협력비용보다 매출액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은 매출규모가 클수록 작아짐.
 -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 영농조합법인 조사에서도 드러남.

- 이 연구에서 추산된 납세협력비용은 기존 연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홍범교 외(2013)는 농·임·어·광업 사업자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을 139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3.7원으로 추정하였음.

- 기존 연구결과와 이 연구의 차이는 조사방법의 차이, 설문조사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부족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조사방법의 차이는 납세협력비용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홍범교 외(2013)는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였음.
 - 표준비용모형은 전문가가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전체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세무 전문가가 납세 관련 업무를 세세히 나누어 각 프로세스마다 표준원가를 산정하므로 설문조사 방식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설문조사 방식과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해보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은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한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김형준·박명호 2007; 홍범교 외 2013).
 - 김형준·박명호(2007)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정한 법인의 법인세 관련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업체당 4,083만 원이었으나, 홍범교 외(2013)가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법인의 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095만 원(법인세 외 타 세목 포함)으로 나타나 표준비용모형으로 추정한 납

세협력비용이 설문조사로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의 한계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과대 추정될 수 있음.
 - 응답자가 납세협력비용의 개념과 납세 관련 업무의 범위 및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납세협력비용은 일상적인 회계 업무를 제외하고 납세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회계 업무와 납세 관련 업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법인이 영농기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업무는 회계처리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지만 납세 관련 업무이기도 함.
 - 이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면접조사가 아닌 전화조사 방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따라서 설문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응답자가 질문자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음.
- 응답표본이 평균적인 농업인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과대 추계될 수 있음.
 - 설문에 응답한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는 평균적인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에 비해 경영규모나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평균적인 농업인의 실제 납세협력비용은 이 연구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설문조사에서는 농업인의 납세방식과 납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농업인의 납세활동에서 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의 대리인 사용 비중을 조사한 결과 대리인 활용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납세 준비활동이 시간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유발하고 농업인이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고용함으로써 납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 농업인이 납세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는 신고서식 작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행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신고서식 작성은 영농조합법인과 한돈농가가 공통적으로 난이도 1순위로 지목하였음.

- 농업인이 납세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세금 관련 정보 부족,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신고서류이며, 그중에서도 세금 관련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응답자 중 38.1%, 한돈농가 응답자 중 29.8%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농업인들이 세금 관련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대리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자 단체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세무 대리인을 중개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업인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농업인들은 정부로부터 납세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 대리 인력의 지원이나 세금 관련 정보제공, 세금 관련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농업인은 납세를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추정된 납세협력비용보다는 낮은 수준이겠으나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납세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납세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의 납세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인이 납세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은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정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음.
 - 다양한 경로로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이 조세 제도를 친숙하게 느끼고 주어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짜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금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농업인을 위한 세금 안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가 세계 홍보를 위하여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 이야기』를 2016년에 발간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배포 범위가 넓지 않았음.
 - 농협에서는 『생활속의 세금』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짐.
 - 매년 바뀌는 세계 내용을 홍보하거나 각종 세금의 납부 일정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져 농업인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업인의 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제를 고려한 농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세제가 복잡하여 일회성의 안내문이나 책자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세무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금 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 납세 대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농업인이 이를 통해 납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납세 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기존의 생산자 단체가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 단체 중 조직 범위가 넓고 경제사업, 금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농·축협이 농업인의 세무 대행을 위한 조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농·축협은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농기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매입기록 및 매출기록을 세금 신고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농·축협이 금융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세금 관련 서비스와 함께 농가의 재무 컨설팅도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농·축협이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무 관련 상담, 세무 신고서 대리 작성, 대리 신고 등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축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농·축협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부는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거나 농·축협이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구체적인 지원 방식 수립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는 농업인의 장부작성, 비용 및 매출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등 세무와 관련된 활동이 정착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세무 활동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있어 이들을 통해 컨설팅과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농업회의소 산하의 농촌경제센터(CERFRANCE)에서 농업인의 세무·회계 대행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FNSEA도 세금 관련 자문과 상담을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농협이 조합원의 매입·매출 기록을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 농협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임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농업인들의 납세 신고를 대행하여 주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재무 상담을 포함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농업인은 일본 농협에 저장된 매입·매출 기록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일본 농협의 대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할 수 있음.

부 록 1

농업법인 대상 납세실태 설문지

[납세행정 실태 파악을 위한 농업법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인의 납세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세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한 농업인(법인)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답변 사항은 외부에 공표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편 58217)
 연구책임자 임소영(061-820-2239/sylim@krei.re.kr)
 Fax: 061-820-2416

1. 일반사항

1-1. 귀 법인명은 무엇입니까? _____

1-2. 해당 법인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_____ 도/광역시 시/구/군

1-9. 2017년 현재 귀 법인의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 ① 상시근로자 ⇒ _____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_____명

1-10. 2016년 작년 귀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① 5억 원 미만 ② 5억~10억 원 미만 ③ 10억~15억 원 미만 ④ 15억~20억 원 미만
 ⑤ 20억~25억 원 미만 ⑥ 25억~30억 원 미만 ⑦ 30억~35억 원 미만 ⑧ 35억~40억 원 미만
 ⑨ 40억~50억 원 미만 ⑩ 50억~70억 원 미만 ⑪ 70억~100억 원 미만 ⑫ 100억 원 이상

1-11. 2016년 작년 한 해 동안 귀 법인의 총 매출액 중 각 사업 유형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농축산물 생산 | (_____)% |
| ② 농축산물 가공 | (_____)% |
| ③ 농축산물 유통 | (_____)% |
| ④ 농작업 대행 | (_____)% |
| ⑤ 외식업 | (_____)% |
| ⑥ 기타(_____) | (_____)% |
| 합 계 | (100)% |

2. 납세 현황

2-1. 귀 법인에서는 어떤 세목의 세금을 신고하였습니까?

(2016년 귀속분 기준, 복수응답 가능)

-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기타(_____)

2-6-2. 세무/회계 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②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 ③ 가까운 곳에 세무/회계사무소가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 ④ 정기적인 세무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 ⑤ 기타(_____)

2-7. 법인세 납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단,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는 예외 인정)

부가가치세 납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5년간 보존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장부기장 및 비치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 후 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위의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를 위한 준비작업 중 어려운 순서대로 1부터 6까지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순위
-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순위
- 기타 비용(사무용품, 운반비 등)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순위

- 장부기장 및 비치 ()순위
- 신고서식 작성 ()순위
- 기타() ()순위

2-8. 귀 법인은 국세청에 세무관련 신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① 서면신고만
- ② 전자신고만
- ③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3. 세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귀 법인은 세무/회계 대리인 외에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3-1-1. [문3-1의 '예' 응답 법인만] 귀 법인이 세무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 ②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 ③ 인터넷 포털 사이트
- ④ 가족, 지인,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인적 네트워크
- ⑤ 기타()

3-2. 납세의 절차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신고 및 납부 횟수의 과다
- ② 복잡한 신고절차
- ③ 과다한 서류제출
- ④ 세금 관련 정보 부족
- ⑤ 기타()

3-3.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납세를 돕기 위하여 지원한다면 특히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한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부 지원 필요 없음
- ② 세금 관련 정보제공
- ③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 ④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
- ⑤ 기타(_____)

2-4. 귀 농가가 2016년도에 외부 인력(세무사 또는 회계사) 비용을 제외하고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기록 보관·유지비 | 연 (_____)원 |
| ② 인쇄비 | 연 (_____)원 |
| ③ 여비·교통비 | 연 (_____)원 |
| ④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 | 연 (_____)원 |
| ⑤ 비품·소모품비 | 연 (_____)원 |
| ⑥ 전기료 등 공과금 | 연 (_____)원 |
| ⑦ 기타(_____) | 연 (_____)원 |

2-5.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 장부 작성, 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 등의 납세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를 납세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거나 사업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의무와 관련하여 납세를 위한 준비작업 중 어려운 순서대로 1부터 6까지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 | | |
|--------------------------------------|-------------|
|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 (_____)순위 |
| ○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_____)순위 |
| ○ 기타 비용(사무용품, 운반비 등) 관련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_____)순위 |
| ○ 장부기장 및 비치 | (_____)순위 |
| ○ 신고서식 작성 | (_____)순위 |
| ○ 신고서류 제출 | (_____)순위 |

2-6. 인건비, 사료, 농기자재 등을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지출증빙자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이합니까?

- ① 매우 용이함
- ② 용이한 편임
- ③ 보통임
- ④ 용이하지 않은 편임
- ⑤ 매우 용이하지 않음

2-7. 귀 농가는 국세청에 세무관련 신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 ① 서면신고만
- ② 전자신고만
- ③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3. 세무 관련 정책지원

3-1. 세금신고가 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모르겠음

3-1-1. (3-1에서 ①을 선택한 사람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대출신청 시 증빙자료로서 활용 가능
- ② 농가경영상태 파악 및 계획 수립에 도움
- ③ 근로장려세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④ 기타

3-2. 귀 농가가 세무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 ②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 ③ 인터넷 포털 사이트
- ④ 가족, 지인, 동종업계 종사자 등 인적 네트워크
- ⑤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 ⑥ 기타()

3-3. 만약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가 세무 관련 컨설팅, 세무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모르겠음

3-4. 납세의 절차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신고 및 납부 횟수의 과다
- ② 복잡한 신고절차
- ③ 과도한 신고서류
- ④ 세금 관련 정보 부족
- ⑤ 익숙치 않은 신고방법(전자신고의 경우)
- ⑥ 세무서의 지리적 접근성 떨어짐
- ⑦ 기타()

3-5. 농식품부가 농업인의 납세를 돕기 위하여 지원한다면 특히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정부 지원 필요 없음
- ② 세금 관련 정보제공
- ③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 ④ 세무/회계 대리 인력 지원
- ⑤ 기타(_____)

부 록 3

납세 관련 용어 설명

용어	정의
복식부기 (複式簿記, bookkeeping by double en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
과세표준 (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가격, 수량, 종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확정신고 (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 즉,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함.
조정계산서 (調整計算書, statement of adju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
결정세액 (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세액공제 (稅額控除,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납부세액 (納付稅額, amount of tax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월결손금 (移越缺損金, loss carried for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계속)

용어	정의
추계결정 (推計決定, determination by esti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함. 그러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경정방법 등이 적용됨.
기준경비율 (基準經費率, basic expense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aggregate incom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함.
종합과세 (綜合課稅, aggregate ta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분류과세하고 있음.
분리과세 (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 즉 납세 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 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임.
포괄손익계산서 (包括損益計算書,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2017. 11. 10.).

참고문헌

- 곽태원. 1994.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5. 『조세개요 2015』; 임소영·김윤진(재인용).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R7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16. 『조세개요 2016』.
- 김형준·박명호. 2007.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2016』.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 _____. 2017. 『2015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보고서』.
- 박명호. 2008.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표준비용모형에 대하여.” 『재정포럼』 148: 50-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명호·김형준·조진권. 2008. 『표준비용모형을 활용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전오·김완일·이강오. 2008.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 이준구·조명환. 2016. 『재정학』. 문우사.
- 정수화. 1993.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비 부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신준. 1993.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5.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9: 215-257. 한국조세학회.
-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 2013.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총괄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ichfelder, Sebastian and François Vaillancourt. 2014. “Tax compliance costs: A review of cost burdens and cost structures.” *argus Discussion Paper* No. 178.
- Sapiei, Noor Sharoja, Mazni Abdullah, Noor Adwa Sulaiman. 2014. “Regressivity of the corporate taxpayers’ compliance cos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4: 26-31.
- Slemrod, Joel and Varsh Venkatesh. 2002. “The Income tax compliance cost of large and

mid-size businesses: A Report to the IRS LMSB Division.” Working Paper 914,
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검색일: 2017. 10. 4.

